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 8월 16일부터 시행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강화

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격제 적정성심사기준요령을 포함한 5개의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완료하고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저가심의제의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교통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공종 평균입찰금액의 20%에서 「1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하였다.

또 변칙적인 입찰방지를 위해 공종 평균입찰금액 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키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2단계로 분리·평가해 단계별 가부방식(Pass or Fail)으로 운용하고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증심사기능의 활성화와 보증기관 간의 경쟁유도를 위해 보증기관을 현행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기술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에서 은행으로까지 확대하였다.

■ 저가심의기준

지나친 저가입찰 및 변칙적인 입찰을 방지하고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과도한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자 배제기준을 강화하였다. 부적정한 공종 수가 전체 공종수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를 입찰금액의 20%에서 5% 이상 낮은 경우로 조정하였다.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도 크게 강화하였다.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종 평균입찰금액의 20%에서 10% 이상 낮은 경우로 변경하였다.

또 공종 평균입찰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공종의 입

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변칙적인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공종 평균입찰금액이 50% 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낙찰자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 기준을 현행 10% 포인트에서 5% 포인트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기준은 시행일인 지난 8월 16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찰참가자격심사(PQ) 요령

PQ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2단계로 분리해 단계별 가부방식(Pass or Fail)으로 심사하는 한편 경영상태는 시장에 의한 평가위주로 운용함으로써 계약이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상태비율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재무상태비율 등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적격요건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재무상태비율 80점 이상 등으로 한정하였다.

또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심사분야를 기술능력 심사항목의 하나인 시공평가결과를 한 개 분야로 독립시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분야 등 4개 분야로 확대하고 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배점한도는 시공경험 45점, 기술능력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신인도 3점 등이다.

이 부분의 배점에 있어 시공평가결과는 개정 이전의 총기술적 공사이행능력점수 대비 5.7%였던 비중이 10%로 확대되었다. 시공평가결과의 점수는 발주기관들이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시공현장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업체들은 앞으로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능력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비중도 2.8%에서 4%로 높아졌다.

또 공동계약의 경영상태평가는 지분율에 따른 보완을 불인정하고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은 입찰적격

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개정요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업체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해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별로 심사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종전 규정에 의해 심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2006년 7월 1일부터, 100억~500억원 미만은 2007년 7월 1일부터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하도록 하였다.

■ 적격심사기준

PQ심사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2단계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PQ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공사이행보증운용요령

보증기관을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 등 4개 기관에서 은행까지 확대해 보증심사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증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공동도급운용요령

공동도급 업체수 및 출자지분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강제 탈퇴 요건을 완화하였다. 공동도급 업체수를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부도 등

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강제탈퇴가 가능하도록 공동수급협

정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계약법령회계예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7, 2003.12.26)</p> <p><u>제6조(심사기준등)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전심사시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u></p>	<p>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8, 2004. 10.1)</p> <p><u>제6조(심사기준등) ①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u></p> <p><u>②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 또는 재무상태비율에 의하여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p><u>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u></p> <p>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p> <p>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p> <p><u>2.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u></p> <p>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p> <p>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p> <p><u>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u></p> <p><u>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시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심사를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 • 사전심사기준은 제6조에서 규정 - 별표에는 심사항목 및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기준과 각 항목별 평가방법을 규정

법령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u>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u> 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성질 · 내용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p>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 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 등급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p>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 · 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 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 · 감정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8조(심사방법) ①(생략)</p> <p>② 제1항의 심사결과 시공경험 ·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500이상의 평점을 득한 자로서 신인도를 합한 종합평점이 60 점(이하 “입찰적격기준점수”라 한다)이상을 득한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42 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 90점을 입찰적격기준점수로 한다.</p>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를 30%(제2항단서의 경우는 5%)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p> <p>----- 제6조의 규정 및 별표1.2 -----</p> <p>----- 여야 한다.</p>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 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p> <p>③ -----</p> <p>----- 별표1.2의 분야별 · 항목별 배점한도 -----</p> <p>-----</p> <p>-----</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8조(심사방법) ①(현행과 같음)</p> <p>②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방법(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상태비율)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p> <p>③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의 회사체,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p> <p>④ 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3항의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경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생략

현 행	개 정	비 고
④(생략)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자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 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 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⑤(현행 제4항과 같음)	
②(생략) 제10조(재심사) ①(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 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생략)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제8조제4항-----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적격자선정대상에서 제외 2. (생략)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 ----- ----- ----- 1. 제8조제4항-----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년도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 절수이상(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점수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생략)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등) ①----- ----- ----- ----- ----- ----- ----- ----- ----- 2.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현행과 같음) ②-----	

법령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p>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 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 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p> <p>1. 시공경험,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시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p> <p>2. 경영상태,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p> <p>③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사를 면제 받은 자가 공동계약의 주계약자일 때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사전심사의 면제자로 할 수 있다.</p>	<p>-----</p> <p>-----</p> <p>-----</p> <p>----- 제7조 -----</p> <p>-----</p> <p>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 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심사</p> <p>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p> <p>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시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p> <p>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p> <p>④ 제2항1호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p>	
	<p>부 칙</p> <p>제1조 이 회계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①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6월30일까지는 종전규정(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2200.04-147-17, 2003.12.26)에 의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방법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 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체의 평점과 같다.</p> <p>③ 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한다.</p> <p>1.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p> <p>2.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1일</p>	

[별표] 시설사업기준(6조관련)

1. 추정기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항목	배점한도
분야별 계	배점한도 계	항목별	배점한도 100
3. 경영 상태	30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100
		1)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3
		2) 최근년도 유동比率(유동자산/유동부채)	3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1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2
		5)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의매출액	2
		6)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3
		7) 최근년도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3
		8)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1
		9) 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 산)×2]	2
		10) 신용평가등급	4
		11)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3
		12) 영업기간	3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0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항목	배점한도
분야별 계	배점한도 0상	심사 항 목	5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1. 추정기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	10	공사규모(추정기격 기준)별 배점한도	20
		1)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0
		2) 최근년도 유동比率(유동자산/유동부채)	10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3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7
		5)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의매출액	10
		6)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10
		7) 최근년도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3
		8)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7
		9) 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 산)×2]	7
		10) 신용평가등급	15
		11)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10
		12) 영업기간	8
		합 계	100
		합 계	100

주 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가" 항목과 "나" 항목은 티밀 적용하되, 입찰첨가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 평가방법에 의함)

2. "나" 항목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심사기준일 이전 기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체 또는 기업여러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입찰첨가자의 회사체와 기업여러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현행		개정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회사체			평점
AAA			30.0
AA+, AA0, AA-	A1		29.0
A+	A2+		28.6
A0	A20		28.3
A-	A2-		28.0
BBB+	A3+		27.5
BBB0	A30		27.3
BBB-	A3-		27.0
BB+, BB0	B+		25.7
BB-	B0		25.0
B+, B0, B-	B		23.0
CCC+ 이하	C 이하		20.0

3. “가” 항목의 1)~9)는 건설업체의 기증평균비율평가형특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4. “가” 항목의 1)~9)에 의한 평기는 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체에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통하여 평가할 수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과구성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당해 회계연도에 세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함.
6.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기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실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 1)~9)는 건설업체의 기증평균비율평가형특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 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2. 1)~9)에 의한 평기는 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체에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하여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과구성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세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신설업체가 설립일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 경영태세를 평가함.
4.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기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실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현 행		개 정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성 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성 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평가결산 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5.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평가결산 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9."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이 실시기준일 이전 기장 최근에 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기준과 같은 평가기준과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구성원의 평점은 3점으로 평가함.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기준과 같은 평가기준과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신용평가등급</th> <th colspan="3">신용평가등급</th> </tr> <tr> <th>회시체</th> <th>기업어음</th> <th>평점</th> <th>회시체</th> <th>기업어음</th> </tr> </thead> <tbody> <tr> <td>AAA</td> <td>-</td> <td>4.0</td> <td>AAA</td> <td>-</td> </tr> <tr> <td>AA</td> <td>A1</td> <td>4.0</td> <td>AA</td> <td>AA</td> </tr> <tr> <td>A</td> <td>A2</td> <td>3.8</td> <td>A</td> <td>A1</td> </tr> <tr> <td>BBB</td> <td>A3</td> <td>3.6</td> <td>A2</td> <td>A</td> </tr> <tr> <td>BB</td> <td>B</td> <td>3.3</td> <td>B3</td> <td>BB</td> </tr> <tr> <td>B</td> <td>B+</td> <td>3.0</td> <td>B</td> <td>BB</td> </tr> <tr> <td>CCC이하</td> <td>C이하</td> <td>0</td> <td>B-</td> <td>B</td> </tr> </tbody> </table>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시체	기업어음	평점	회시체	기업어음	AAA	-	4.0	AAA	-	AA	A1	4.0	AA	AA	A	A2	3.8	A	A1	BBB	A3	3.6	A2	A	BB	B	3.3	B3	BB	B	B+	3.0	B	BB	CCC이하	C이하	0	B-	B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신용평가등급</th> <th colspan="3">신용평가등급</th> </tr> <tr> <th>회시체</th> <th>기업어음</th> <th>평점</th> <th>회시체</th> <th>기업어음</th> </tr> </thead> <tbody> <tr> <td>AAA</td> <td>-</td> <td>4.0</td> <td>AAA</td> <td>-</td> </tr> <tr> <td>AA</td> <td>A1</td> <td>4.0</td> <td>AA</td> <td>AA</td> </tr> <tr> <td>A</td> <td>A2</td> <td>3.8</td> <td>A</td> <td>A</td> </tr> <tr> <td>BBB</td> <td>A3</td> <td>3.6</td> <td>B3</td> <td>BB</td> </tr> <tr> <td>BB</td> <td>B</td> <td>3.3</td> <td>B</td> <td>BB</td> </tr> <tr> <td>B</td> <td>B+</td> <td>3.0</td> <td>B-</td> <td>B</td> </tr> <tr> <td>CCC이하</td> <td>C이하</td> <td>0</td> <td>CCC이하</td> <td>CCC이하</td> </tr> </tbody> </table>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시체	기업어음	평점	회시체	기업어음	AAA	-	4.0	AAA	-	AA	A1	4.0	AA	AA	A	A2	3.8	A	A	BBB	A3	3.6	B3	BB	BB	B	3.3	B	BB	B	B+	3.0	B-	B	CCC이하	C이하	0	CCC이하	CCC이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시체	기업어음	평점	회시체	기업어음																																																																																									
AAA	-	4.0	AAA	-																																																																																									
AA	A1	4.0	AA	AA																																																																																									
A	A2	3.8	A	A1																																																																																									
BBB	A3	3.6	A2	A																																																																																									
BB	B	3.3	B3	BB																																																																																									
B	B+	3.0	B	BB																																																																																									
CCC이하	C이하	0	B-	B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시체	기업어음	평점	회시체	기업어음																																																																																									
AAA	-	4.0	AAA	-																																																																																									
AA	A1	4.0	AA	AA																																																																																									
A	A2	3.8	A	A																																																																																									
BBB	A3	3.6	B3	BB																																																																																									
BB	B	3.3	B	BB																																																																																									
B	B+	3.0	B-	B																																																																																									
CCC이하	C이하	0	CCC이하	CCC이하																																																																																									
9.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평가하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시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7.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평가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시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의견 : 3 • 한정의견 : 2 • 적정 또는 의견거절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의견 : 10 • 한정의견 : 6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2 																																																																																											
10.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 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8.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																																																																																											

현행	개정
<p>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번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이상 : 30년만기 20년이상 : 25 • 20년만기 10년이상 : 2 • 10년만기 5년이상 : 1 • 5년만기 0.5 	<p>지는 험병대상업체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p> <p>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의 번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p>
<p>11.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의 번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체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p> <p>10. 추정기액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연도별 예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를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법한 업체는 협박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의견이 없는 협박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p>	<p>10. 추정기액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연도별 예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를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법한 업체는 협박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의견이 없는 협박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p>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비중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한도
	분야별	형목별		
1. 시공 경험	34	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설계시공증인 등 종공사실적 포함)	28 16 8	1. 시공 경험 2. 기술 능력
2. 기술 능력	36	다. 최근 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 사의 실적합계 가. 등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5 30 2	34 22 11 30 4

현 행				개 정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분야별	배점한도	분야별	항목별	분야별	배점한도	분야별	항목별		
계	100	다. 시공평가 결과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미.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4 4 4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재난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설치물이 건설업체의 평균자체물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업정지·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발전기준에 해 당되는 자	100 100 100	제1항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8 3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 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재난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설치물이 건설업체의 평균자체물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발전기준에 해 당되는 자	10 10 10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재난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설치물이 건설업체의 평균자체물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업정지·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발전기준에 해 당되는 자	1 -2 +2 -3 -3 -3 -1 -1 -3	3. 시공평 기질과 4. 신인도	10 10 3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 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재난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설치물이 건설업체의 평균자체물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발전기준에 해 당되는 자	-2 +3 -3 -3 -1 -1 -3		

주) 시공경험 평가방법

- “가” 항목과 “나” 항목은 택일 적용함.
- 시공중인 등총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현 행	개 정
<p>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p> <p>1. “나” 항목의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한(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1점배점)</p> <p>2. “나” 항목의 시공경험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7’ 및 ‘나’ 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통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기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p> <p>3.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p> <p>4.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p>	<p>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p> <p>1. “나” 항목의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한(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p> <p>2.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p> <p>3.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p> <p>3.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p> <p>4.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p> <p>5.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p> <p>단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7’ 및 ‘나’ 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기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p> <p>주3) 신인도분야 평가방법</p> <p>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p> <p>2. 항목별 특성· 규모· 내용· 기간 등의 경증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p> <p>3. 환경관련 법령은 동 차별시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p> <p>4.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2.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500억원이상인 공사</p> <p>3.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p>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 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생략) (신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원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원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 ③(현행과 같음)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원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 ③(생략)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원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 ③(현행과 같음)

적격심사기준중 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4, 2003. 12. 26)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5, 2004. 10. 1)
	부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현		개		정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성태 • 신인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40)	70						
당해공사 수행능력	• 하도급 관리체계의 적정성 • 자재 및 인력조달 기준의 적정성 • 시공이유율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 미기성총액/시공 능력 공시액	(12) (14) (4)	• PQ심사항목을 이용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시공평가결과 • 경영상태 • 신인도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자재 및 인력조달 기준의 적정성 • 미기성총액/시공 능력 공시액 • 시공여유율	(40) (12) (14) (4) 입찰가격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 평점산식 : 아래									
주 1) (생략)									
주 2) (생략)									
주 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시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과의 표에 의함									
2. 공시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									
시공경험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술능력	34	32	32	32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32 4 30 3	32 3 33 3	3 3 35 3	3 3 35 3					

개정		신종평가 등급					공사구도비추정기준 기준별 배점		
회사체	기업이음	기업신용평가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5.0	34.0	33.6
AAA AA+, AA0, AA-	A1 A2+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0 B+, B0, B- CCC+ 이하	AAA AA+, AA0, AA- A+ A0 A- A3+ A0 A9- B+	29.0 28.6 28.3 28.0 27.5 27.3 27.0 25.7 25.0 23.0 20.0	33.0 31.6 31.3 31.0 30.5 30.3 30.0 28.7 28.0 26.0 24.0	36.0 34.0 33.3 33.0 32.5 32.3 32.0 30.4 29.5 27.0 25.0				

- POC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 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분이 심사항목 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저점평기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기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체, 기업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기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체	기업이음	기업신용평가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AAA AA+, AA0, AA-	A1 A2+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0 B+, B0, B- CCC+ 이하	AAA AA+, AA0, AA- A+ A0 A- A3+ A0 A9- B+	29.0 28.6 28.3 28.0 27.5 27.3 27.0 25.7 25.0 23.0 20.0	33.0 31.6 31.3 31.0 30.5 30.3 30.0 28.7 28.0 26.0 24.0	36.0 34.0 33.3 33.0 32.5 32.3 32.0 30.4 29.5 27.0 25.0				

2. 추정기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기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생략)

3. 추정기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3. 추정기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표성략)

4. 추정기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4. 추정기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표 생략)

5. 추정기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등 5. 추정기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등 (표 생략)

법령개정

6. 일괄입찰·대입찰입찰공사				개정			
6. 일괄입찰·대입찰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입찰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입찰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입찰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입찰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입찰입찰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 현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 현도
계		추첨기준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비 고	계		추첨기준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PQ심사 항목을 이용 • 신인도	(20)	당해공사 수행능력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시공협력결과 • 경영상태 • 신인도	(20)	(15)
설계평가			45	설계평가			45
입찰기준			35	※ 평점산식 : 아래			35
				입찰기준			40
							※ 평점산식 : 0점

주) 입찰기준 평점산식
(설계·기술)

(설계)
(기술과 같음)